13. 住宅建設 適正管理指針 改正施行

資料提供 : 建設部

- 개정내용 -

●「사업계획승인권한재위임승인철회에따른업무처리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고 동조 제3항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① 시도지사는 기 시달한 '92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월별관리물량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계획상의 부문별 물량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배정된 '92년도의 부문별 총물량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월별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199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연기조건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 지침시행일부터 착공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종 전	개 정
제 5 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기시달한 '92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월별관리물량의 범위내에서 지역별실정을 감안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 5 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 …… …… 다만, 동계획상의 부문별 물량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배정된 '92년도의 부문별 총물량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월별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종전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삭제

사업계획승인권한재위임승인철회에따른업무처리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권한중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도록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을 철회함에 따라 동법 제32조에 의거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인의 불편해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권한의 재위임승인철회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전과 다른 승인절차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승인신청) 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종전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심사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권자중 시도지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을 별지 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서의 심사) ① 접수된 신청서는 심사권자가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아닌 심사권자는 심사 및 검토가 종료되면 승인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명시하여 심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권자의 심사 및 검토결과는 시도지사의 심사결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기시달한 '92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월별 관리물량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계획상의 부문별 물량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배정된 '92년도 건설총물량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월별로는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도지사가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단위사업의 승인물량이 월별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별물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분기별 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1992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연기조건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의 경우에도 이 지침시행일부터 착공할 수 있다.